

## 『나라지킴이 적금』 특약

### 제1조 적용범위

“나라지킴이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합니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적립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### 제2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### 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#### 1. 군 의무복무병

- 가. 현역병 : 육·해·공군 및 해병대 의무복무병사
- 나. 전환복무자 : 의무소방원, 교정시설 경비교도, 전투경찰, 의무경찰, 산업기능요원, 승선근무예비역, 전문연구요원, 공중보건 의사, 공익법무관
- 다. 사회복무요원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·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에서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

#### 2. 제1호를 제외한 군인 :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육·해·공군사관생도, 간호사관생도, ROTC, 학사장교후보생, 여군사관후보생, 준사관·부사관후보생

#### 3. 입영예정자 : 입영통지서 수령자

#### 4. 기타 : 군무원, 전역 후 6개월 이내인 자

※ 가입대상 증빙서류 : 이 예금 가입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
- 해당 기관장 명의 복무확인서
- 휴가증, 외출증, 외박증
- 입영통지서(입영예정자), 병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
-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또는 신분증(사회복무요원증 등)

### 제4조 가입제한

이 예금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.

### 제5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일단위로 합니다.

### 제6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.

**제7조 적립방법**

- ① 이 예금의 추가 적립 시 1회 최저 1천원 이상이며, 1개월 납입한도는 10만원 이내로 합니다.
- ② 고객이 이 예금에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 1회 적립하는 자동이체등록만이 가능하며, 자동이체등록 고객이 추가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 납입한도에서 자동이체금액을 차감한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

**제8조 이자 및 이자율의 적용**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- ②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.2%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.
  - 1. 제3조 가입대상 1,2,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 1.5%
  - 2. 가입기간중 포상휴가를 받고 휴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가입기간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시하는 경우 또는 이 예금 만기 전전월까지 KEB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공과금 1건 이상 자동이체 시 연 0.2% (자격증 :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격증으로 국가자격(국가기술자격, 국가전문자격), 국가공인민간자격, 외국자력에 포함되는 자격증에 한함  
예시 - 워드프로세스, 컴퓨터활용능력, 한자능력급수, 미용사, 제빵기능사 등 (자격증종류는 <http://www.q-net.or.kr/main.jsp>에서 참고))
  - 3. 본인 명의 현혈증 제시 또는 금연 서약(금연서약서 작성)을 하는 경우 연 0.2%
  - 4.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이 적금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급여 공제를 통해 이 적금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.3%

**제9조 중도해지이자율**

- ①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군 전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우대금리를 제외한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**제10조 만기후이자율**

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5년 7월 9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<부칙1>

본 약관은 2016년 4월 5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개정 전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.

<부칙2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